

CONTENTS

Chapter <u>1</u>	증권대행사업무 소개 / 4 증권대행업무 안내 / 5
Chapter <u>2</u>	통일규격증권 / 전자증권 발행 절차 / 10
Chapter <u>3</u>	통일규격증권 등 발행 절차 상세 설명 / 22
Chapter <u>4</u>	상장 효과 및 절차 / 34
Chapter <u>5</u>	KB국민은행 기업금융 종합 서비스 / 38 KB금융그룹 계열사 연계 서비스 / 39
Chapter <u>6</u>	별첨 양식 / 42
Chapter <u>7</u>	주식 사무 인계 서류 Sample / 66
Chapter <u>8</u>	FAQ / 82

시장에 공개되기 전 중요정보의 유출과 이용은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금지되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귀사의 미공개 중요정보가 언급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hapter 1

- 증권대행사업부 소개
- 증권대행업무 안내

증권대행사업무 소개



광범위한 Network

- 전국단위 영업망을 통한 주주관련업무(주식 계좌 수령 등) 처리 가능

전문인력 맞춤 서비스

- 신규 계약 체결에서 상장 완료까지 전문인력에 의한 주식 업무 Consulting
- 상장 이후 회사별 전담 인력에 의한 지속적인 전문 Consulting
- KB국민은행의 기업금융 종합 서비스 지원
- KB금융그룹 계열사 연계 종합 금융서비스 지원

증권대행 시장 Leader

- 전체 증권대행 시장(코스닥 및 코넥스 포함) 점유율 1위(KB) 한국예탁결제원 > KEB하나

KB국민은행 신용등급 및 수상 이력

- KB국민은행은 국제신용평가 기관 Moody's 신용등급 "Aa3", S&P 신용등급 "A+", Fitch 신용등급 "A" 등급을 받은 대한민국 대표은행입니다.
- 은행권 최초 "국가고객만족도(NCSI)" 은행 부문 17회 1위 선정 (2023)



증권대행업무 안내

증권대행업무란?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발행한 주권(미발행확인서 등)을 **증권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통일규격증권**이나 **전자증권**으로 교체 / 등록 발행하고, 주주 관련 업무(주주총회 등)를 위탁하여 대행하는 것"

통일규격증권? 전자증권?

- 현재 회사의 주식은 증권회사 주식계좌를 통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 증권대행기관을 통해 규격화된 주식으로 교체(무형 or 실물)하면 비상장 주식도 증권회사 주식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실물 또는 증권회사 주식계좌를 통해 거래 가능한 주식을 「통일규격증권」이라 하고, 전자등록 발행을 통해 주식계좌를 통해서만 거래 가능한 주식을 「전자증권」이라 합니다.

증권대행기관(명의개서대리인)이란?

- 회사의 비규격 주권을 통일규격증권이나 전자증권으로 교체하여 주주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증권대행기관(명의개서대리인)이라 부릅니다.
- 증권대행기관은 KB국민은행, 한국예탁결제원, KEB하나은행 3개사가 있습니다.

증권대행 업무를 왜 해야 하나요?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 K-OTC 상장을 원하는 경우 규정에 따른 필수 조건

비상장 기업

- 기업의 공신력을 높여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 증권계좌를 통해 주주들간 주식 매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 주주가 많아 주주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식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 주주간 또는 금융기관 등에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세무서 물납을 위해

증권대행업무 안내

증권대행 업무를 통해 회사는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 K-OTC 상장 조건을 충족하고, 주식업무를 담당하는 필수 전문인력 양성에 선제적 준비 가능
- 상장 준비부터 상장 이후까지 체계적인 주식업무 관리 및 전문적인 컨설팅 가능
- 주주는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의 매매가 가능하며, 회사는 주주관리의 리스크를 최소화
- 투자자들에 대한 회사의 공신력 제고 및 벤처캐피탈, 기관 등 신규 투자자 유치 가능

통일규격증권(or 전자증권) 발행 이후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주주명부 파악을 위한 사유 및 기간이 필요합니다.

- 통일규격증권 등 발행 이후 주주는 증권회사 주식계좌를 통해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주 현황은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상법상 정해진 사유(임시주주총회, 액면분할, 무상증자, 상장예비심사 청구 등)**로 미래 특정 일자의 주주명부를 파악하여 줄 것을 증권대행사업부로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 증권대행사업부는 전 증권사로부터 회사의 주주명부를 취합하여 **'특정 일자 + 6영업일'** 내에 회사에 최종 주주명부를 드립니다.

상법에 정해진 각 주식 업무별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통일규격증권 등 발행 이후 주식 관련 업무(유상증자, 무상증자, 임시주주총회 등) 진행 시 **일정을 협의 결정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상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주식업무 총 소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2주간 전 공고,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2주간전 통지 의무 준수

증권대행업무 안내

통일규격증권(or 전자증권) 발행 이후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임시주주총회 일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5 May 2024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기준일 공고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주총기준일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주주명부 수령	28	29	30 소집통지서 납품마감일	31 우편료 입금일	

- ✓ 주총소집이사회 및 기준일 공고 5월 2일
- ✓ 임시주총기준일 5월 17일
- 주주명부 수령 5월 27일

6 June 2024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소집통지서 발송일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주주총회일	19	20	21	22
23 30	24	25	26	27	28	29

- ✓ 주주총회일 2주전 소집통지
- ✓ 주주총회일 6월 18일

Chapter 2

- 통일규격증권 / 전자증권 발행 절차
 1. 증권대행업무 계약 체결
 2. 주식사무 인계 · 인수(통일규격증권)
 3. 주식사무 인계 · 인수(전자증권)

증권대행업무 안내

통일규격증권(or 전자증권) 발행 이후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주주명부상에서 명부주주와 실질주주가 구분됩니다

- 명부주주 :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을 교부 받지 않은 주주
- 실질주주 :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예시) 홍길동, 박길동, 이길동님 주식을 각 주주의 증권계좌로 교부받은 경우

(변경 전) 주주명부		(변경 후) 주주명부	
홍길동	400,000주	한국예탁결제원	800,000주
박길동	200,000주	김국민	50,000주
이길동	200,000주	최국민	50,000주
김국민	50,000주	우리사주조합(정국민)	100,000주
최국민	50,000주	합계	1,000,000주
우리사주조합(정국민)	100,000주		
합계	1,000,000주		

매년 증권대행업무 수수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기본 수수료 [별첨1-1 : page42]

- 매년 납부하는 고정비
- 결산월 익월 말일까지 선납
- 회사의 납입 자본금에 따라
최저 126만원 ~ 최고 700만원
- 코스닥, 코넥스 상장시 50% 감면

※ 단, 올해의 기본 수수료는 통일규격증권 등 발행월부터 결산월까지 월할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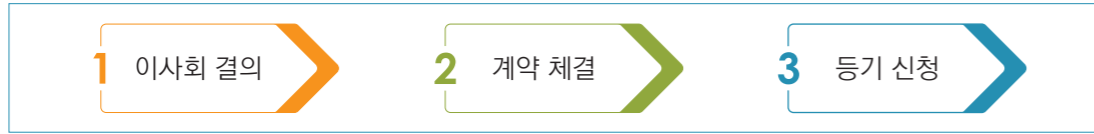
개별 수수료 [별첨1-2 : page43]

- 주식 관련 업무 건수 및 처리량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 매 분기 익월 말까지 납부 (1, 4, 7, 10월)
- 회사별로 업무 건수 및 처리량이 달라 개별수수료 청구 금액 상이

※ 주주총회 소집 1건당 120원,
주식계좌 이체 1,000주당 80원 등

통일규격증권 / 전자증권 발행 절차 (공통)

1. 증권대행업무 계약 체결



Step 1 이사회 결의

• 아래의 안건으로 이사회 개최 및 결의

1.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 및 본점 소재지
 - 상호 : 주식회사 국민은행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2. 기타사항
 - 대행업무의 범위 및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 이사회 의사록 [별첨2-1, page44] 작성

Step 2 계약 체결

•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서'에 법인인감 날인 및 각장에 간인

Step 3 등기 신청

•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본점의 관할 등기소 앞 등기 신청

- ① 이사회 의사록 ② 정관 사본(원본대조필) ③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계약 체결 전 유의 사항!

✓ 정관 변경 필요 시 : 이사회 결의 [별첨2-2, page45] ⇒ 임시주주총회 개최 [별첨4-1, page53] ⇒ 정관 변경 사항 등기 신청

* (통일규격증권의 경우)

필수 조항 - 주권의 종류(8종류), 신주의 동등배당, 명의개서대리인 [별첨3, page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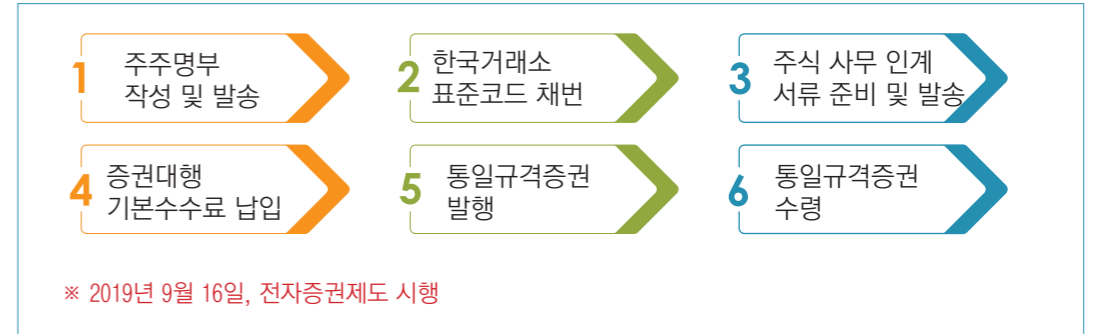
삭제 조항 - 주권의 양도 제한, 주권의 불소지제도 미채택, 주주의 수수료 납부

* (전자증권의 경우) : 주권의 종류(8종류) 삭제, 전자등록 관련 조항 신설

✓ 액면 분할 필요 시 : 이사회 결의 [별첨2-3, page46] ⇒ 임시주주총회 [별첨4-2, page54] 개최 ⇒ 구주권 제출 공고(1개월) [별첨5, page55] ⇒ 액면분할 등기 신청

통일규격증권 발행 절차

2. 주식 사무 인계 · 인수(통일규격증권)



※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Step 1 주주명부 작성 및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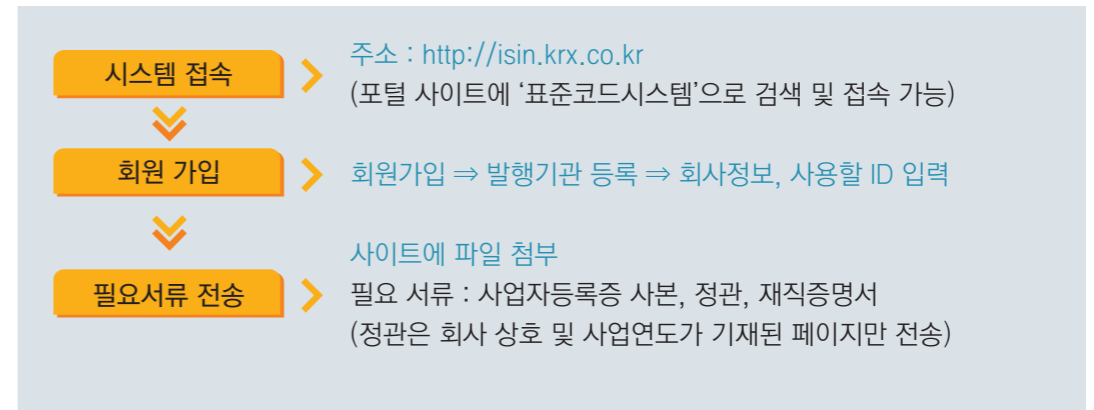
• 아래의 방법으로 주주명부(엑셀 양식) 작성, 자세한 작성 방법은 [별첨6-1, page56] 참조

- ① 주 주 번 호 : 개인은 주민번호, 법인은 사업자번호, 펀드 및 조합은 고유번호
- ② 주 소 : 주주가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장소
- ③ 대주주코드 : 아래의 순서로 작성
 02(대주주 1인) ⇒ 04(대주주 친인척) ⇒ 06(등기 임원) ⇒ 05(관계 회사)
 03(지분율 1% 이상) ⇒ 01(지분율 1% 미만)

• 주주명부(엑셀 양식)가 작성 완료되면 증권대행사업무 담당자 앞 이메일 발송

Step 2 한국거래소 표준코드 채번 [별첨7, page58~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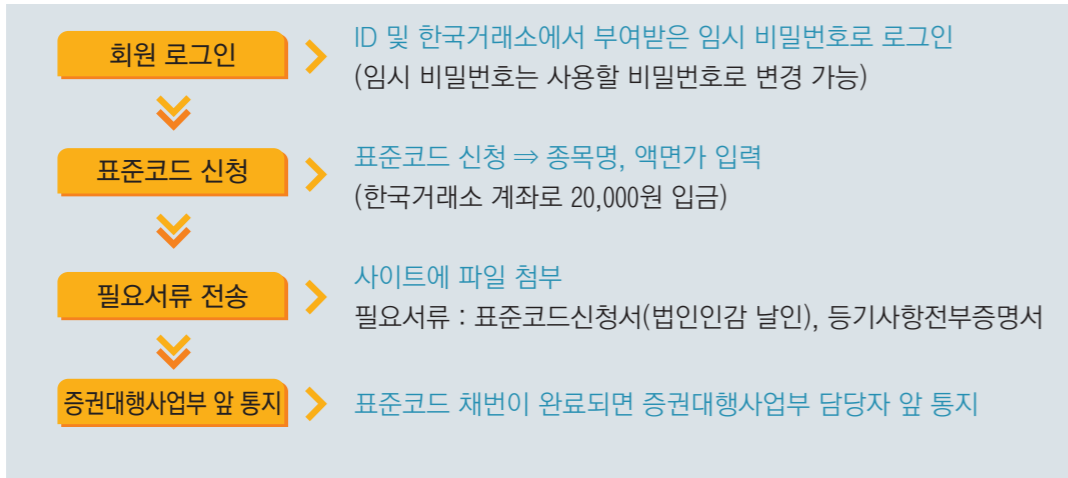
• 한국거래소 표준코드 시스템 회원 가입



통일규격증권 발행 절차

Step2 한국거래소 표준코드 채번 [계속]

-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표준코드 채번



Step3 주식 사무 인계 서류 준비 및 발송

- 증권대행사업무 담당자가 주식사무 인계 서류 초안을 작성하여 회사 담당자 앞 이메일 발송
- 아래의 주식 사무 인계 서류를 준비하여 증권대행사업무 담당자 앞 우편 발송

- | | |
|--|---------------|
| ① 주식사무 인계 공문 양식 [chapter7] :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
⇒ 사용인감은 향후 증권대행사업무 앞 주식업무 위탁시 사용할 인감입니다 | ③ 주주명부 1부 |
| ② 증권대행업무수탁계약서 1부 | ④ 이사회의사록 사본 |
| ④ 정관 2부(원본대조필) | ⑤ 이사회의사록 사본 |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 ⑦ 법인인감증명서 2부 |
| ⑥ 법인명의 은행계좌 사본 | ⑧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
| 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 |

- 우선주가 있을 경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발송

- | |
|------------------------------------|
| ① 우선주 계약서 사본 1부(모든 주주의 우선주 계약서 필요) |
| ② 이사회의사록(우선주 발행) 사본 |

통일규격증권 발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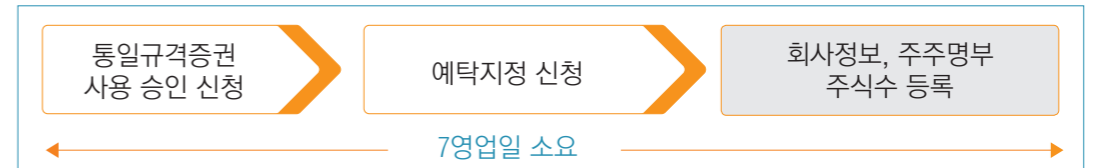
Step4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납입

- 증권대행사업무 담당자에게 안내받은 기본수수료를 증권대행사업무 계좌로 송금

- ※ 기본수수료 계산 산식
- ① 당해년도
 납입자본금별 기본수수료 X (통일규격증권 발행월 ~ 결산월까지 남은 월수) / 12월
 ex) 12월 결산하는 법인(납입자본금 7억원)이 5월에 발행할 경우 기본수수료
 ⇒ 126만원 x 8개월 / 12월 = 84만원
- ② 익년도 이후
 납입자본금별 기본수수료를 매 결산월 익월말까지 납부
- ※ 납입자본금별 기본수수료 세부 내역은 [별첨1-1, page42] 참조
 ※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되는 경우 기본수수료의 50% 감면

Step5 통일규격증권 발행

- 주권 실물 발행 없이 주식계좌로 넣을 수 있는 형태 : 증권대행사업무 담당자가 진행



통일규격증권 발행 절차

Step 6 통일규격증권 수령

“통일규격증권 발행이 완료되면 주주는 **본인이나 대리인 또는 회사의 신청에 의해** 주식을 **주주 본인의 주식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주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법

1 서류 준비

신청인 자격별 서류 준비

2 주식 수령 신청

영업점 또는 증권대행사업무 방문 신청

3 주식수령

• 주식계좌 수령(7영업일 소요)

신청인 자격별 준비 서류

신청인 자격	준비 서류 (주식계좌로 수령 시)
개 인	본 인 : 신분증, 증권카드 사본 대리인 : 주주 신분증 사본, 주주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증권카드 사본
법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증권카드 사본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투자등록증 등), 증권카드 사본 ※ 외국인 주주의 경우, 금감원에서 기발급한 외국인투자등록증 또는 LEI(Legal Entity Identifier, 법인식별기호) 필요.
조 합	고유번호증 사본, 업무집행조합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무집행조합원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조합원 원부 또는 규약집 사본, 증권카드 사본

※ 증권카드 사본 대신 계좌 확인서(증권사 발행), HTS 화면 프린트 등 주주명과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면 가능

회사가 주주 대신 신청하는 방법

1 서류 준비

• 대행예약의뢰서
• 주주실명증표 사본
• 증권카드 사본

2 주식 수령 신청

• 위탁회사 담당자 앞 서류 이메일 발송

3 주식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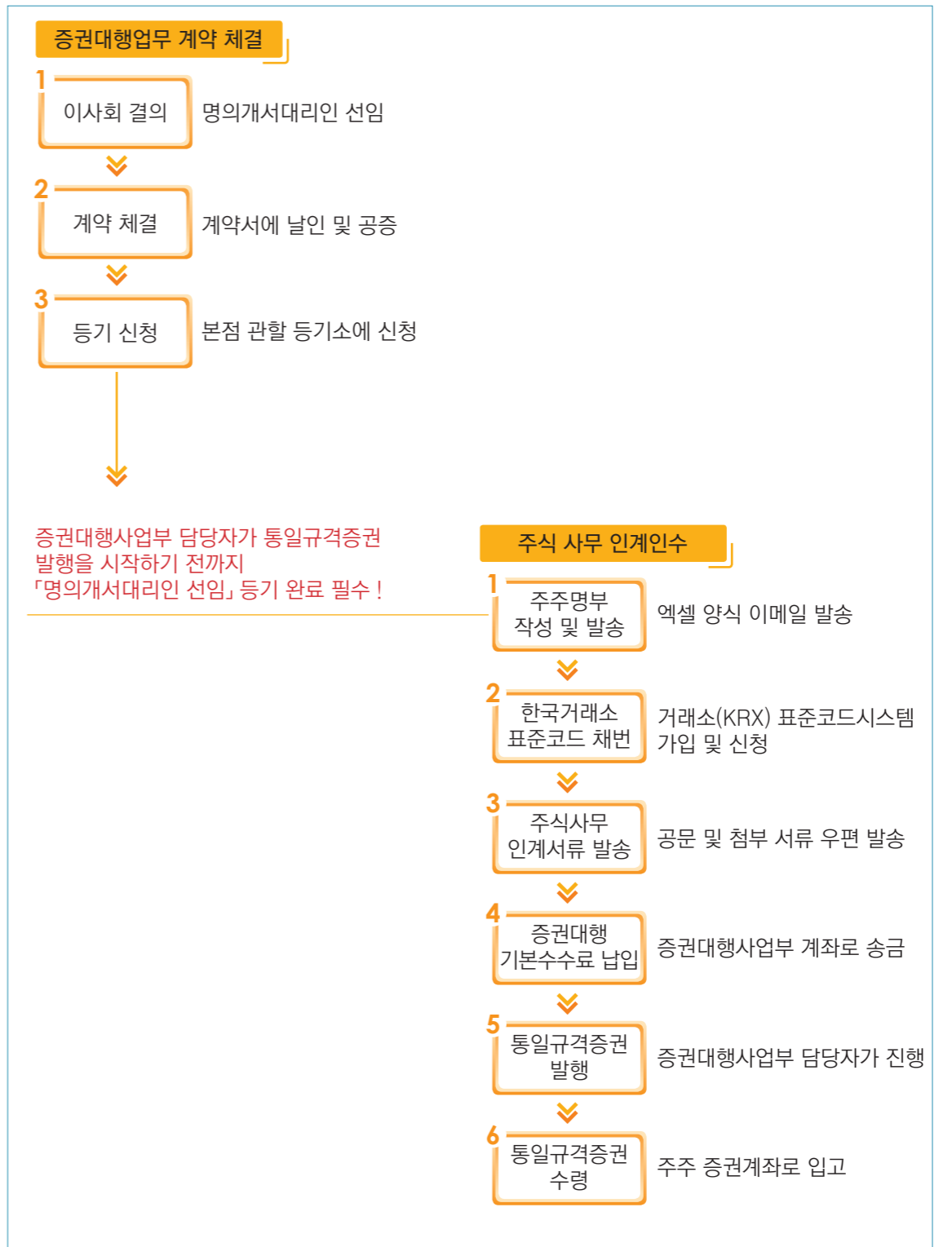
• 주식계좌 수령 (3영업일 소요)

※ 주주 실명증표 사본 : 개인(신분증 앞면), 법인(사업자등록증), 조합(고유번호증)

통일규격증권 발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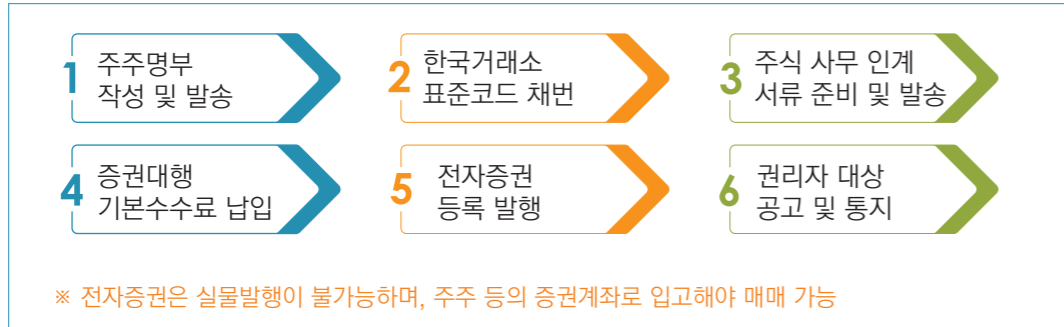
한 눈에 보는

통일규격증권 발행 Process



전자증권 발행 절차

3. 주식 사무 인계 · 인수(전자증권)



Step1 주주명부 작성 및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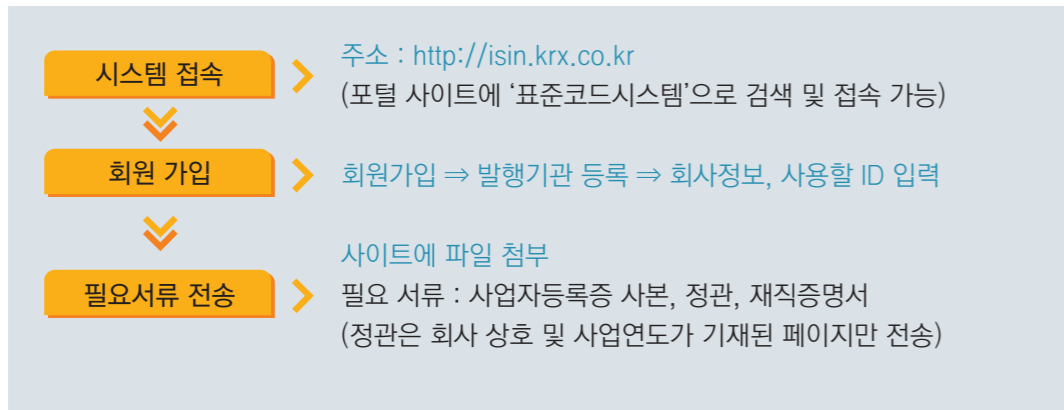
• 아래의 방법으로 주주명부(엑셀 양식) 작성, 자세한 작성 방법은 [별첨6-2, page57] 참조

- ① 주 주 번 호 : 개인은 주민번호, 법인은 사업자번호, 펀드 및 조합은 고유번호
- ② 주 소 : 주주가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장소
- ③ 대주주코드 : 아래의 순서로 작성
02(대주주 1인) ⇒ 04(대주주 친인척) ⇒ 06(등기임원) ⇒ 05(관계 회사)
03(지분율 1% 이상) ⇒ 01(지분율 1% 미만)
- ④ 계 좌 정 보 : 증권사명, 주식을 입고받을 수 있는 증권사 계좌번호 기재

• 주주명부(엑셀 양식)가 작성 완료되면 증권대행사 업무 담당자 앞 이메일 발송

Step2 한국거래소 표준코드 채번 [별첨7, page58~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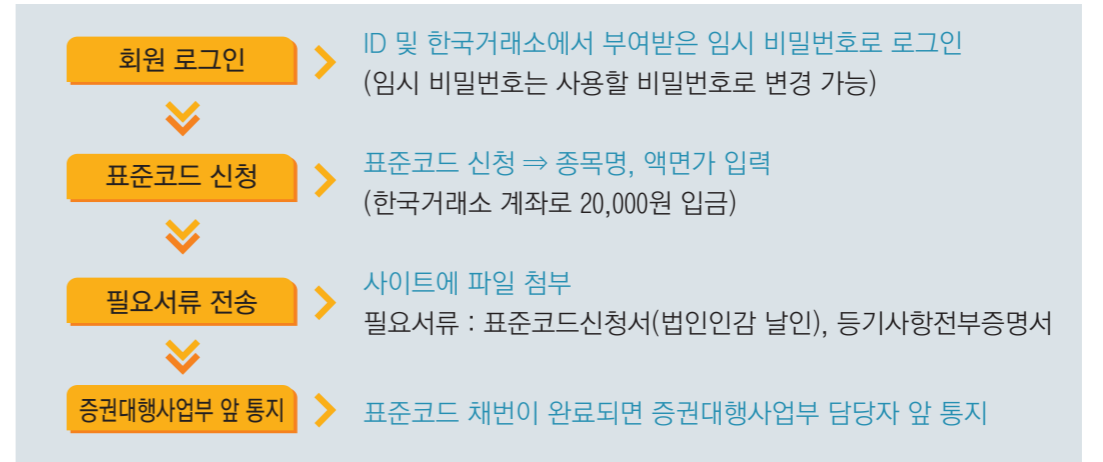
• 한국거래소 표준코드 시스템 회원 가입



전자증권 발행 절차

Step2 한국거래소 표준코드 채번 [계속]

•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표준코드 채번



Step3 주식 사무 인계 서류 준비 및 발송

• 증권대행사 업무 담당자가 주식사무 인계 서류 초안을 작성하여 회사 담당자 앞 이메일 발송
• 아래의 주식 사무 인계 서류를 준비하여 증권대행사 업무 담당자 앞 우편 발송

- ① 주식사무 인계 공문 양식 [chapter7] :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
⇒ 사용인감은 향후 증권대행사 업무 앞 주식업무 위탁서 사용할 인감입니다
- ② 증권대행업무수탁계약서 1부
- ③ 주주명부 1부
- ④ 정관 2부(원본대조필)
- ⑤ 이사회 의사록 사본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 ⑦ 법인인감증명서 2부
- ⑧ 법인명의 은행계좌 사본
- ⑨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 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 우선주가 있을 경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발송

- ① 우선주 계약서 사본 1부(모든 주주의 우선주 계약서 필요)
- ② 이사회 의사록(우선주 발행) 사본

전자증권 발행 절차

Step4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납입

- 증권대행사업무 담당자에게 안내받은 기본수수료를 증권대행사업무 계좌로 송금

※ 기본수수료 계산 산식

① 당해년도

납입자본금별 기본수수료 X (전자등록월 ~ 결산월까지 남은 월수) / 12월

ex) 12월 결산하는 법인(납입자본금 7억원)이 5월에 발행할 경우 기본수수료
 ⇒ 126만원 x 8개월 / 12월 = 84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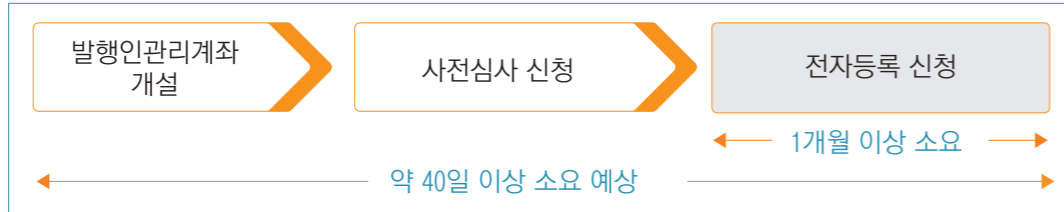
② 익년도 이후

납입자본금별 기본수수료를 매 결산월 익월말까지 납부

※ 납입자본금별 기본수수료 세부 내역은 [별첨1-1, page42] 참조

※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되는 경우 기본수수료의 50% 감면

Step5 전자증권 등록 발행



- 전자등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후의 날을 전자등록일(유통일)로 정해야 하므로 약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전자등록 발행 일정 진행 필요
- 주식 등을 전자등록 발행하는 경우 **주주 본인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입고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함
- 전자등록일(유통일) 7영업일 전까지 **주주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제출하지 않으면** 명의개서대행기관인 당행은 주주명의를 **특별계좌를 개설함**
- 전자등록을 신청한 이후에는 기준일 설정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정하지 않도록 유의

전자증권 발행 절차

Step5 전자증권 등록 발행 (계속)

- **발행인 관리계좌** : 증권 발행 관련 사항과 주식수를 기록·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하는 계좌
- **사전심사** : 주식 종목별로 전자증권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심사
- **전자등록** : 주식 및 소유 관계사항을 전자적으로 등록 발행하는 것으로,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는 실물 발행을 할 수 없음
- **특별계좌** :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증권계좌를 미제출한 주주를 위해 개설하는 임시 계좌로서 명의개서, 질권(신탁) 설정 등 일부 업무가 제한됨

Step6 권리자 대상 공고 및 통지

- 전자등록을 하려는 날(전자등록일=유통일)의 직전 영업일을 말일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상 공고 방법**에 따라 전자등록 관련 사항을 **공고**
-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자에게 전자등록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1회 이상 **통지**

권리자 대상 통지 내용(예시)

- 전자등록일부터 실물주권 등은 효력을 잃는다.
- 발행인(위탁회사)에게 전자등록 계좌를 통지하고 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 발행인은 전자등록일 직전 영업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 기준으로 전자등록 요청한다.
- 전자등록계좌 및 주권을 미제출할 경우 명의개서 대행기관 특별계좌에 등록되며 일부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전자증권 발행 절차

한 눈에 보는

전자증권 등록 발행 Process

증권대행업무 계약 체결

- 1 **이사회 결의**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 2 **계약 체결** 계약서에 날인 및 공증
- 3 **등기 신청** 본점 관할 등기소에 신청

증권대행사업부 담당자가 사무인수를 진행하기 전까지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등기 완료 필수!

주식 사무 인계인수

- 1 **주주명부 작성 및 발송** 엑셀 양식 이메일 발송
- 2 **한국거래소 표준코드 채번** 거래소(KRX) 표준코드시스템 가입 및 신청
- 3 **주식사무 인계서류 발송** 공문 및 첨부 서류 우편 발송
- 4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납입** 증권대행사업부 계좌로 송금
- 5 **전자증권 등록 발행** 증권대행사업부 담당자가 진행
- 6 **권리자 대상 공고 및 통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
- 7 **전자증권 수령** 주주증권계좌로 입고

Chapter 3

• 통일규격증권 등 발행 절차 상세 설명

「통일규격증권 등 발행 절차」 상세 설명

통일규격증권 발행은 「증권대행업무 계약 체결」과 「주식사무 인계·인수」의 2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상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대행업무 계약 체결 [Chapter2 page10]

- 증권대행업무 계약 체결은 세부적으로 이사회 결의, 계약 체결, 등기 신청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이사회 결의

- 먼저 아래의 안건 2가지를 이사회 안건에 넣어 이사회 결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 및 본점 소재지
 - 상호 : 주식회사 국민은행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2. 기타 사항
 - 대행업무의 범위 및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 이사회 결의가 완료되면 [별첨 2-1, page44]을 참조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체결

- 계약 체결은 저희가 드린「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서」 2부에 회사와 증권대행사업부가 각자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행위입니다. 계약서의 각 장은 접어서 간인까지 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 8페이지에 계약 날짜를 기재하실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이사회 결의일로 하시되, 꼭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더라도 등기 신청일의 2주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3 등기 신청

- 이사회 결의 및 계약 체결 행위가 완료되면 법무사에 의뢰하여 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이사회 의사록
2. 정관 사본(원본대조필)
3.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 등기 신청일로부터 2주 내에 명의개서대리인 등기가 완료되며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기 타 사 항

1.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2000년 00월 00일 설치
2000년 00월 00일 등기

「통일규격증권 등 발행 절차」 상세 설명

계약 체결 전 유의 사항! ⇒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증권대행업무 계약 체결을 하기 전에 회사의 정관 변경이 필요하거나 액면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며 세부 절차는 아래의 각 케이스별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Case 1-1 회사의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통일규격증권)

- 회사의 정관에는 아래의 필수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삭제 조항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 필수 조항

- 1) 주권의 종류 :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 2) 신주의 동등배당 :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동종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 3)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4)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삭제 조항

- 1) 주권의 양도 제한 : 주주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한다.
- 2) 주권의 불소지 제도 미채택 : 회사는 주권의 불소지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주주가 주식 실물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회사에 대항력을 가진다는 의미)
- 3) 수수료 납부 : 명의개서 시 주주는 회사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4) 주금납입금의 지체 : 주금납입 지체 시 주주는 회사에서 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 정관 변경을 위해 먼저 이사회를 열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안건을 결의하고 [별첨 2-2, page45]를 참조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 ②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 안건을 결의하고 [별첨 4-1, page53]을 참조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 ③ 정관 변경 및 명의개서대리인 안건을 함께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합니다.

이사회 결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명의개서대리인)

임시주주총회 결의
(정관 변경)

등기 신청
(정관 변경)
(명의개서대리인)

「통일규격증권 등 발행 절차」 상세 설명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정관개정(안)

증권대행업무 계약 체결을 하기 전에 회사의 정관 변경이 필요하거나 액면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며 세부 절차는 아래의 각 케이스별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Case 1-2 회사의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전자증권)

• 회사의 정관에는 아래의 필수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삭제 조항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 필수 조항

- 1)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2) 신주의 동등배당 :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동종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 3)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대행업무 규정에 따른다.

○ 삭제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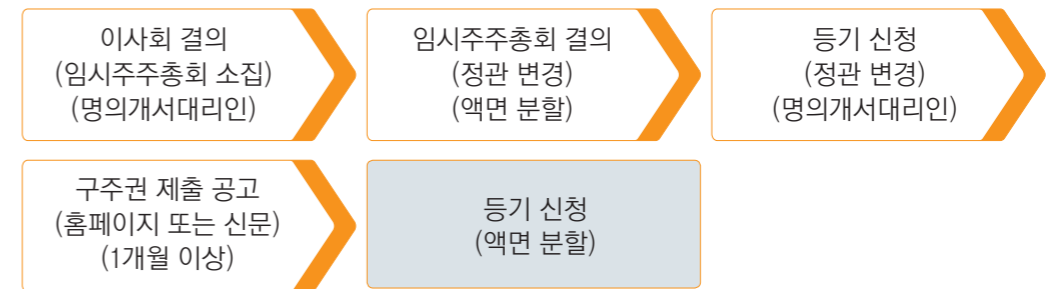
- 1) 주권의 종류 :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 2)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3) 주권의 양도 제한 : 주주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한다.
- 4) 주권의 불소지제도 미채택 : 회사는 주권의 불소지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주주가 주식 실물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회사에 대항력을 가진다는 의미)
- 5) 수수료 납부 : 명의개서 시 주주는 회사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6) 주금납입금의 지체 : 주금납입 지체 시 주주는 회사에서 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정관 변경을 위한 프로세스는 통일규격증권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통일규격증권 등 발행 절차」 상세 설명

Case 2 회사의 정관 변경과 액면 분할이 모두 필요한 경우

- ① 먼저 이사회를 열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안건을 결의하고 [별첨 2-3, page46]를 참조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 ②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 및 액면분할 안건을 결의하고 [별첨 4-2, page54]를 참조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 ③ 임시주주총회 결의 후 먼저 정관 변경 및 명의개서대리인을 함께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합니다.
- ④ 정관에서 정한 공고 방법(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따라 1개월 이상 구주권 제출 공고를 하시면 됩니다. 공고문은 [별첨5, page55]를 참조해 주십시오
- ⑤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액면분할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합니다.



「통일규격증권 등 발행 절차」 상세 설명

2. 주식 사무 인계 · 인수 [Chapter2 page11~20]

통일규격증권/전자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회사의 주식 사무를 증권대행사업무에 인계하는 동시에 증권대행사 업무는 회사의 주식 사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주주명부 작성 및 발송

- 우선 이메일로 보내드린 주주명부 양식(엑셀)에 주주명부를 작성하시어 다시 이메일로 회신해 주십시오
- 주주명부는 아래의 방법으로 작성하시고, 세부 작성 방법은 [별첨6-1~6-2, page56~57]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주주명부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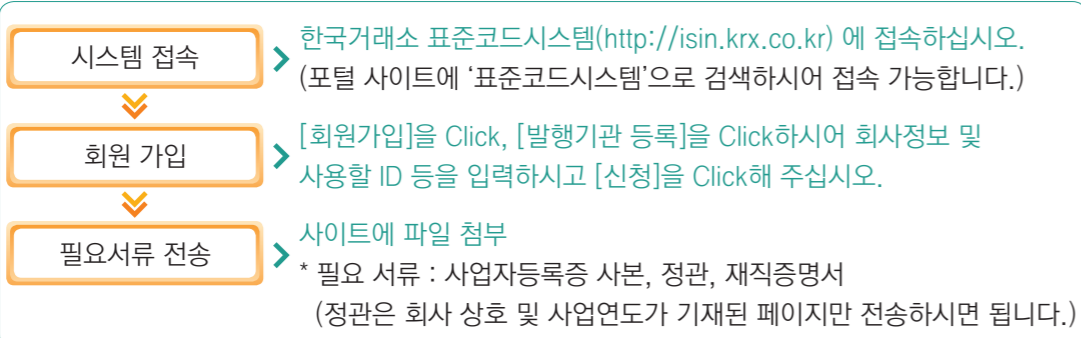
- ① 주주번호 : 개인은 주민번호, 법인은 사업자번호, 펀드 및 조합은 고유번호 기재
- ② 주소 : 주주가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기재
- ③ 대주주코드 : 아래의 순서대로 작성
대주주 1명을 02로 체크 ⇒ 대주주 가족은 04로 체크 ⇒ 회사 등기 임원은 06으로 체크 ⇒ 회사와 상호 지분관계에 있는 관계 회사는 05로 체크 ⇒ 지분율 1% 이상 주주는 03으로 체크 ⇒ 지분율 1% 미만 주주는 01로 체크

○ 전자증권의 경우

- ④ 계좌정보 : 증권사코드 : 증권사별 코드 입력(6자리)
계정구분 : 신탁분인 경우에만 4자리로 입력
신탁구분 : 자기분(기관주주의 자기자본투자분 등)/고객분/신탁분
계좌번호 : 증권사 계좌번호(앞자리에 0이 있는 경우 0까지 모두 입력)

2. 한국거래소 표준코드 채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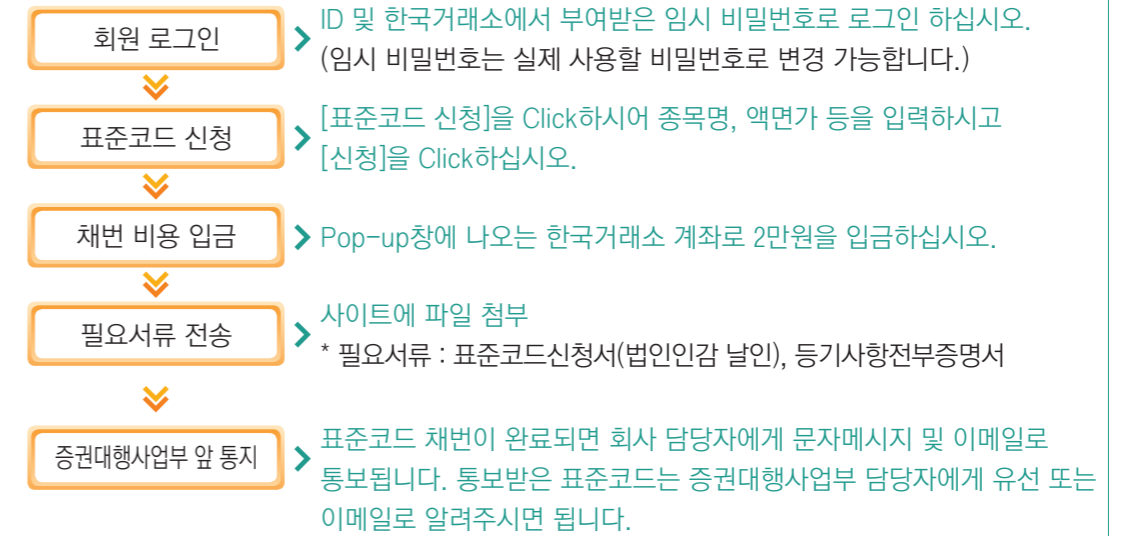
- 통일규격증권 및 전자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한국거래소 표준코드시스템에 회원 가입 및 주권 종류별(보통주, 우선주, 2우선주, 3우선주, ...) 표준코드 채번이 필요합니다.
- 우선 아래의 순서대로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십시오 (상세한 절차는 [별첨7, page58]을 참조해 주십시오)



「통일규격증권 등 발행 절차」 상세 설명

2. 한국거래소 표준코드 채번 (계속)

-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아래의 순서대로 표준코드를 채번해 주십시오



3. 주식 사무 인계 서류 준비 및 발송

- 주주명부 작성과 표준코드 채번이 완료되면 회사가 증권대행사업무로 보내주셔야 할 주식 사무 인계에 필요한 양식 일체는 증권대행사업무 담당자가 작성해 이메일로 회신해 드립니다
- 증권대행사업무 담당자가 작성해서 보내드린 양식은 출력 후 법인인감을 날인하시고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어 증권대행사업무 담당자 앞으로 우편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 준비하실 서류의 구체적인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회사별로 준비서류는 조금씩 상이할 수 있어 정확한 목록은 이메일을 보낼 때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 준비 서류 목록

- ① 주식사무 인계 공문 양식 : 증권대행사업무 담당자가 작성을 완료했으므로 출력하시어 법인인감 이라 표시 된 곳에 날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chapter7]
- ② 증권대행업무수탁계약서 원본 1부
- ③ 주주명부 1부
- ④ 정관 2부(원본대조필)
- ⑤ 이사회 의사록 사본(명의개서대리인 선임 안건)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 ⑦ 법인인감증명서 2부
- ⑧ 법인명의 은행계좌 사본
- ⑨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 ⑩ (통일규격증권 실물발행이 있을 경우) 주권전용인감 실물 : 주권전용인감은 주권 실물 가짜가 필요한 경우에만 주권 실물에 날인될 인감으로 증권대행사업무에서 보관합니다.
- ⑪ (우선주가 있을 경우) 우선주 계약서 사본 1부 (모든 주주의 우선주 계약서 필요)
- ⑫ (우선주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사록(우선주발행) 사본

「통일규격증권 등 발행 절차」 상세 설명

4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납입

- 증권대행사업부 담당자가 이메일로 보내드린 기본수수료 청구서 상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된 날짜까지 증권대행사업부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 기본수수료는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하여 청구드립니다.

Ex) 납입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의 경우

- ① 당해년도 : $1,260,000\text{원} \times (\text{통일규격증권 등 발행월} \sim \text{결산월까지 남은 월수}) / 12\text{월}$
 - ② 익년도 이후 : 매 년 1,260,000원을 결산월 익월말까지 납부
- *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되는 경우 기본수수료의 50%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 납입자본금별 수수료 세부 내역은 [별첨1-1~1-2, page42]증권대행업무수수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 당사는 면세사업자로서 법인세법시행령 158조에 의거 영수증(세금계산서)을 발행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통일규격증권 등 발행 절차」 상세 설명

5-1 통일규격증권 발행

- 주식사무인계 서류 접수, 표준코드 채번, 수수료 입금이 완료되면 증권대행사업부 담당자가 아래 절차에 따라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합니다.

○ 증권대행사업부 담당자의 통일규격증권 발행 절차

- 7영업일 정도 소요되며 아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① 한국예탁결제원 앞 통일규격증권 사용 승인 및 예탁지정 신청
 - ②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일규격증권 사용 승인 통보
 - ③ KB국민은행 증권대행 전산에 회사 정보, 주주 정보, 주주별 주식 수 등 입력
 - ④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예탁지정 승인 통보

「통일규격증권 등 발행 절차」 상세 설명

5-2 통일규격증권 수령

• 통일규격증권 발행이 완료되면 주주는 본인의 주식 계좌로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시는 경우 아래의 신청인 자격별 서류를 준비하시어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이나 증권대행사업부로 내점하시면 됩니다.
-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주식이 주주의 주식계좌에 들어가기까지 5영업일, 증권대행사업부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3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신청인 자격	준비 서류 (주식계좌로 수령 시)
개 인	• 본 인 : 신분증, 증권카드 사본 • 대리인 : 주주 신분증 사본, 주주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증권카드 사본
법 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증권카드 사본
외국인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투자등록증 등), 증권카드 사본 ※ 외국인 주주의 경우, 금감원에서 기발급한 외국인투자등록증 또는 LEI(Legal Entity Identifier, 법인식별기호) 필요.
조 합	• 고유번호증 사본, 업무집행조합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무집행조합원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조합원 원부 또는 규약집 사본, 증권카드 사본

※ 증권카드 사본 대신 계좌 확인서(증권사 발행), HTS 화면 프린트 등 주주명과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면 가능합니다.

「통일규격증권 등 발행 절차」 상세 설명

6-1 전자증권 등록 발행

• 주식사무인계 서류 접수, 표준코드 채번, 수수료 입금이 완료되면 증권대행사업부 담당자는 전자증권으로의 등록발행 절차를 시작합니다. 전자증권은 주주별 증권계좌로 입고 받아야만 매매거래가 가능하며, 실물 발행은 금지됩니다.

○ 증권대행사업부 담당자의 전자증권 등록 발행 절차

- ① 한국예탁결제원 앞 발행인관리계좌 개설 및 업무참가 신청서 제출 [chapter7]
- ②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발행인관리계좌 정보를 통보 받고, 주식 종목별 사전심사 신청 [chapter7]
- ③ 사전심사 승인 받은 이후, 주식수와 주주정보 등 입력하여 전자등록 신청
- ④ 전자등록일(=유통일) 7영업일 전까지 주주별 증권계좌 정보를 증권대행사업부로 제출 (전자등록신청일부터 전자등록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함)
- ⑤ 전자등록일(=유통일)부터 등록 발행된 주식의 매매거래 가능
※ 증권계좌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주주를 위해 임시계좌인 특별계좌가 개설되나, 특별계좌는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므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입고 받도록 주주별 안내 필요

6-2 공고 및 통지

• 회사는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전자등록일(=유통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정관상 공고방법에 따라 전자등록 관련 사항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1회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권리자 대상 통지 내용(예시)

- 전자등록일부터 실물주권 등은 효력을 잃는다
- 발행인(위탁회사)에게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 발행인은 전자등록일 직전 영업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 기준으로 전자등록을 요청한다.
- 전자등록계좌 및 주권을 미제출할 경우 명의개서대행회사 특별계좌에 등록되며 일부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6-2 특별계좌 계좌대체 신청

- 특별계좌 권리자는 유통일부터 본인의 증권계좌로 계좌대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입고 방법 및 준비서류 등은 5-2. '통일규격증권의 수령(계좌 입고)'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계좌대체 · 대행예탁 신청서

MEMO

Chapter 4

·상장 효과 및 절차

상장 효과 및 절차

상장 효과

-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 우수인력 확보, 기업 공신력 제고



성장 기반 마련

- 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자금 확보 용이(공모)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우수 인력 확보

- 상장기업으로서의 지명도를 활용한 우수인력 확보 용이
- 종업원 프라이드 강화 및 사기진작 효과

기업 공신력 제고

- 기업 홍보 효과
- 상장기업으로서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시장 개척 및 해외 진출 용이

상장 Time Schedule



상장 효과 및 절차

상장 주요 단계별 증권대행 업무

상장 사전 준비

- 증권대행사업부와 계약 체결 및 통일규격증권(or 전자증권) 발행 완료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호 예수를 위한 주식 수령
 - ⇒ 보호예수 : 주관증권사에 개설된 주식계좌로 주주가 수령한 주식을 특정 기간(통상 6개월)동안 매매할 수 없도록 Lock-up
 - ⇒ 보호예수 일정은 주관증권사와 협의 필요
- ※ 필요서류 : 특별계좌대체 · 대행예약신청서, 주주 신분증 사본, 증권카드 사본

상장 예비심사 청구

- 주주명부, 주권불발행확인서(or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급 요청
 -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최소 5영업일 전에 반드시 증권대행사업부 앞 요청
 - ⇒ 주권불발행확인서 :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발행등록사실확인서 : 전자증권 등록발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필요서류 : 전산자료요청의뢰서, 주권불발행확인서 등 발급의뢰서 or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서

증권신고서 제출

- 주주명부, 특수관계인 부당재확인원 발급 요청
 - ⇒ 부당재확인원 : 주관증권사와 회사의 임원 및 주요 주주간 상호 지분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주관증권사 작성)
- ※ 필요서류 : 전산자료요청의뢰서, 특수관계인 부당재확인원

일반공모 유상증자

-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 통보 : 청약 개시일 전 영업일까지 통보
 - ※ 필요서류 :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 공문, 이사회회의사록 사본
- 청약결과 통보, 일괄예약 신청 : 청약익일에 통보 및 신청
 - ※ 필요서류 : 청약결과 통보 공문, 일괄예약 신청 공문
- 상장 신청을 위한 주주명부 및 주권불발행확인서 등 발급 요청
 - ※ 필요서류 : 전산자료요청의뢰서, 주권불발행확인서 등 발급의뢰서 or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서

상장 (Listing)

- 매매 개시

MEMO

Chapter 5

- KB국민은행 기업금융 종합 서비스
- KB금융그룹 계열사 연계 서비스

KB국민은행 기업금융 종합 서비스

KB국민은행은 기업고객의 성공파트너로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기업금융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일반기업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대출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급보증 등) 퇴직연금 / 기업카드 / 임직원 신용대출 등
외환·파생상품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입금융 및 지원 서비스 현물환 / 선물환 / 금리통화스왑·옵션
기업종합자금관리 및 B2B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자금관리 / 영업관리 / 회계관리 서비스 B2B 금융상품
투자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기, 선박 등 국제금융 지분투자 금융
경영컨설팅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종합진단, 재무·회계 진단 인사제도·성과평가제도 컨설팅
부동산/세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 법인 / 대표자 투자자문 서비스 등 세무 : 대표자 상속 / 증여 플랜 등
KB금융그룹사 연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O / 지분투자 / 사모사채인수 등 기업보험 / 신용조사 / 부동산신탁 등

KB금융그룹 계열사 연계 서비스

KB금융그룹 계열사와 연계를 통해 기업 뿐만 아니라 기업체 임직원에게도 **종합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 KB증권**
 - 상장(IPO), 비상장회사 투자, M&A 자문 및 중개, 부동산 PF
 - 유가증권 / 파생상품 Brokerage
 - 금융상품(펀드, 채권, 랩어카운트) 판매, 자산관리 서비스
- KB인베스트먼트**
 - 펀드(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등)를 통한 비상장회사 투자
 - 기업 M&A 자문
- KB자산운용**
 - 기업 자금운용 투자 Solution 제공 (국내외 주식 / 채권 / 부동산 등)
- KB손해보험**
 - 기업보험 서비스(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적하보험, 기술보험 등)
 - 퇴직연금
- KB캐피탈**
 - 자동차 할부 / 리스, 렌터카, 상용차
 - 기업자금 대출, PF, 사모사채 / 기업어음 할인
 - Private Equity Fund 투자, M&A 인수금융
- KB라이프생명**
 - 기업보험 서비스
- KB부동산신탁**
 - 토지신탁,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REITs
 - 자산관리, 대리사무 컨설팅
- KB저축은행**
 - 자영업자 / 가맹점 대출, 할인어음, PF 대출
 - 서민 금융

MEMO

Chapter 6

• 별첨 양식

별첨

[별첨1] 증권대행업무 수수료_기본수수료

▶ 증권대행업무 수수료

1. 기본수수료 : 3년 의무계약, 매년 결산일 익월 말일까지 납부(당해년도 월할 계산)

* 코스닥 / 코넥스 상장법인은 기본수수료 금액의 50% 적용

(2024년 현재 기준)

납입자본금	기본수수료		비 고
	유가증권, 비상장	코스닥, 코넥스	
10억원 미만	1,260,000	630,000	◆ 10억원 초과금액 1억원당 84,000원
10억원	2,240,000	1,120,000	
11억원	2,324,000	1,162,000	
12억원	2,408,000	1,204,000	
13억원	2,492,000	1,246,000	
14억원	2,576,000	1,288,000	
15억원	2,660,000	1,330,000	
16억원	2,744,000	1,372,000	
17억원	2,828,000	1,414,000	
18억원	2,912,000	1,456,000	
19억원	2,996,000	1,498,000	◆ 20억원 초과금액 1억원당 70,000원
20억원	3,080,000	1,540,000	
21억원	3,150,000	1,575,000	
22억원	3,220,000	1,610,000	
23억원	3,290,000	1,645,000	
24억원	3,360,000	1,680,000	
25억원	3,430,000	1,715,000	
26억원	3,500,000	1,750,000	
27억원	3,570,000	1,785,000	
28억원	3,640,000	1,820,000	
29억원	3,710,000	1,855,000	◆ 30억원 초과금액 1억원당 56,000원
30억원	3,780,000	1,890,000	
31억원	3,836,000	1,918,000	
32억원	3,892,000	1,946,000	
33억원	3,948,000	1,974,000	
34억원	4,004,000	2,002,000	
35억원	4,060,000	2,030,000	
36억원	4,116,000	2,058,000	
37억원	4,172,000	2,086,000	
38억원	4,228,000	2,114,000	
39억원	4,284,000	2,142,000	◆ 40억원 초과금액 1억원당 112,000원
40억원	4,340,000	2,170,000	
41억원	4,452,000	2,226,000	
42억원	4,564,000	2,282,000	
43억원	4,676,000	2,338,000	
44억원	4,788,000	2,394,000	
45억원	4,900,000	2,450,000	
46억원	5,012,000	2,506,000	
47억원	5,124,000	2,562,000	
48억원	5,236,000	2,618,000	
49억원	5,348,000	2,674,000	◆ 50억원 초과금액 5억원당 154,000원
50억원	5,460,000	2,730,000	
55억원	5,614,000	2,807,000	
60억원	5,768,000	2,884,000	
65억원	5,922,000	2,961,000	
70억원	6,076,000	3,038,000	
75억원	6,230,000	3,115,000	
80억원	6,384,000	3,192,000	
85억원	6,538,000	3,269,000	
90억원	6,692,000	3,346,000	
95억원	6,846,000	3,423,000	
100억원 이상	7,000,000	3,500,000	

별첨

[별첨1] 증권대행업무 수수료_개별수수료

2. 개별수수료 : 매 분기 익월말까지 납부(4월, 7월, 10월, 1월말)

(2024년 현재 기준)

구 분	단 위	수수료	내 역
처리유가증권	1매당	90원	- 유가증권 명의개서 - 발행·폐기 - 질권 등록·말소 및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 불소지 신고 등에 따른 제처리 유가증권
제신고	1건당	120원	- 주주명부내역 기재 변경 - 사고신고의 처리
통지업무	1건당	120원	- 주주총회 참석장 및 배당금 지급통지서 - 유상·무상증자 배정통지서 - 감사·액면분할관련 교체 발행 통지 - 상법, 위탁회사의 정관 및 기타 법령과 관련하여 통지하는 경우 - 위탁회사의 별도 요청에 의한 제서면 통지
명의개서 처리수수료 (통일규격증권)	1천주당 (1천주 미만은 1천주로 본다)	80원	- 주식 명의개서 - 신탁재산 표시·말소 - 질권등록·말소
미교부주권 보관료	매월말 현재 1만주당 (1만주 미만은 1만주로 본다)	180원	- 주권교부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미교부 주권
제증명	1건당	300원	- 주주명부등재 확인 - 질권등록 확인 - 배당금지급확인 - 주권발행 증명 및 소유주식 확인 등
반송우편물 처리	1건당	120원	- 반송우편물의 정리
재발행	1건당	200원	- 분할, 병합 등 재발행 청구
배당금 및 사채원리금 지급	청구건당	150원	- 배당금 및 사채원리금 지급 청구시
	배당금 및 사채원금 지급액의	4/10,000	- 배당금 및 사채원금의 지급시
	사채이자 지급액의	2/1,000	- 사채이자 지급시
CB, BW 전환청구 (행사)수수료	USD 5,000 기준 SFR 5,000 기준 YEN 500,000 기준	1,600원 1,100원 1,500원	- CB 전환(BW 행사)시 - 기타통화는 USD통화를 근거로 산출함

※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하시는 수수료

주식발행 등록수수료	발행주식 1천주당	300원	- 상한 50만원, 하한 4천원
소유자명세 통지수수료	요청 건당	250,000원	- 분기별 임의요청시

이 사 회 의 사 록

- 일 시 : 2000년 월 일
- 장 소 : 주식회사 00테크 본사 회의실

이사총수 : 명 (출석이사 : 명)
 감사총수 : 명 (출석감사 : 명)

대표이사 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정관 제 조에 의거 당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다음과 같이 선임 하겠다고 설명한 뒤 동의를 구하다.

다 음

1.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 상 호 : 주식회사 국민은행
- 본점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2. 기타사항

- 대행업무의 범위 및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 한다.

출석한 이사들이 토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고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다음에 기명 날인 하다.

2000년 월 일

의 장 대표이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회 의 사 록

- 일 시 : 2000년 월 일
- 장 소 : 주식회사 00테크 본사 회의실

이사총수 : 명 (출석이사 : 명)
 감사총수 : 명 (출석감사 : 명)

대표이사 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정관 제 조에 의거 당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다음과 같이 선임 하겠다고 설명한 뒤 동의를 구하다. 이어서 당사의 임시주주 총회에 관한 일시, 장소 및 안건에 관한 심의를 구한 바, 출석이사 전원이 이의없이 찬성하므로 다음과 같이 가결하다.

다 음

1.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1)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 상 호 : 주식회사 국민은행
- 본점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2) 기타사항

- 대행업무의 범위 및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 한다.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일시 : 2000년 월 일 10:00시
- 2) 임시주주총회 소집장소 : 00시 00구 00로 00길 00, 본사 00강당
- 3)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
 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출석한 이사들이 토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고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다음에 기명 날인 하다.

2000년 월 일

의 장 대표이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회 의 사 록

- 일 시 : 2000년 월 일
- 장 소 : 주식회사 ○○테크 본사 회의실

이사총수 : 명 (출석이사 : 명)
 감사총수 : 명 (출석감사 : 명)

대표이사 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정관 제 조에 의거 당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다음과 같이 선임 하겠다고 설명한 뒤 동의를 구하다. 이어서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일시, 장소 및 안건에 관한 심의를 구한 바, 출석이사 전원이 이의없이 찬성하므로 다음과 같이 가결하다.

다 음

1.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1)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 상 호 : 주식회사 국민은행
- 본점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2) 기타사항

- 대행업무의 범위 및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 한다.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일시 : 2000년 월 일 10:00시

2) 임시주주총회 소집장소 : ○○시 ○○구 ○○로 ○○길 ○○, 본사 ○○강당

3)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

- 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나. 주식분할(액면분할)의 건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1주당 액면가	10,000원	500원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	2,000,000주

출석한 이사들이 토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고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다음에 기명 날인 하다.

2000년 월 일

의 장 대표이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주식회사 ○○테크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테크”이라 한다. 영문으로는“○○tech Co.,Lt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업
2. ○○○○업
3. ○○○○업
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본점의 소재지)

- ①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시 내에 둔다.
-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ech.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주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8조(주권의 종류)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
-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1.0% 이상 10.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 ⑦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 ⑧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⑨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 상황 및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의3(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
-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1.0% 이상 10.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 ⑦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⑧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 ⑨ 제7항 또는 제8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 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 ⑩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9.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 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 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동종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제13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 1.일시 : 2000년 월 일 00:00시 ~ 00:00시
- 2.장소 : 서울시~
위 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 총 발행 주식수 : 기명식 보통주 100,000주 (총 주주수 25명)
- 의결권 있는 총 발행 주식수 : 기명식 보통주 100,000주
- 출석 의결 주주수 : 00명
- 출석 의결 주식수 : 00주(00.00%)
- 3. 의사진행 : 대표이사 000은 정시에 의장석에 등단하여 정관 제00조에 의거 출석이사 및 감사를 확인,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한 뒤 의안 심의에 들어간다.

다 음

- 1)부의 의안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장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요약 설명하고 승인을 구한 바, 참석한 주주 00명 전원, 주식수 100,000주(100%)의 찬성으로 승인 가결하였다.

의장은 이상으로 본 총회 의안 전부가 심의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00시00분에 폐회하다. 이에 위 결의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의장이 본 의사록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다.

2000년 월 일

주식회사 ○ ○ 테크
대표이사 ○ ○ ○ (인)
이 사 ○ ○ ○ (인)
이 사 ○ ○ ○ (인)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제18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 4. 일시 : 2000년 월 일 00:00시 ~ 00:00시
- 5. 장소 : 서울시~
위 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 총 발행 주식수 : 기명식 보통주 100,000주 (총 주주수 25명)
- 의결권 있는 총 발행 주식수 : 기명식 보통주 100,000주
- 출석 의결 주주수 : 00명
- 출석 의결 주식수 : 00주(00.00%)
- 6. 의사진행 : 대표이사 000은 정시에 의장석에 등단하여 정관 제00조에 의거 출석이사 및 감사를 확인,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한 뒤 의안 심의에 들어간다.

다 음

2)부의 의안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주식분할(액면분할)의 건

의장은 주식 분할의 건에 대하여 액면가 10,000원 100,000주의 주식을 액면가 500원 2,000,000주의 주식으로 분할할 것을 요약 설명하고 승인을 구한 바, 참석한 주주 00명 전원, 주식수 100,000주(100%)의 찬성으로 승인 가결하였다.

의장은 이상으로 본 총회 의안 전부가 심의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00시00분에 폐회하다. 이에 위 결의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의장이 본 의사록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다.

2000년 월 일

주식회사 ○ ○ 테크
 대표이사 ○ ○ ○ (인)
 이 사 ○ ○ ○ (인)
 이 사 ○ ○ ○ (인)

액면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안내

당사는 2000년 7월 8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을 변경하고, 액면금액 10,000원의 1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주식 20주로 분할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구주권 회수 및 신주권을 교부하고자 하오니 주주님과 질권자께서는 구주권을 제출하시고 신주권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1. 교체대상 주권 : (주)00테크의 주권
- 2. 구주권 제출기간 : 2000년 7월 9일 ~ 2022년 8월 9일
- 3.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0년 8월 19일
- 4.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 : (주)00테크 본사
- 5. 기타사항 : 구주권 제출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7월 8일

주식회사 ○ ○ 테크
 대표이사 ○ ○ ○

1. 엑셀 LAY-OUT

순번	회사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주명	주소	우편번호	지역코드	국가코드	주주코드	대주주코드	거주유무	발행회차	주식수
1	공란	1234561234567	홍길동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07331	01	100	01	01	1	01	1,000
2	공란	1231212345	○○전자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07331	01	100	11	03	1	01	2,000
3	공란	주민번호(01)	우리사주조합(홍길동)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07331	01	100	13	01	1	01	200

⚠ 유의사항

- ※ Excel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및 우편번호의 "-" 생략하여 주십시오.

2. 참조 코드

지역코드	국가코드			주주코드		대주주코드		
서울 1	대한민국	100	룩셈부르크	206	개인	01	소액주주	01
부산 2	미국	303	아일랜드	231	정부	02	대주주1인	02
대구 3	영국	224	방글라데시	145	정부관리	03	1% 이상주주	03
광주 4	일본	102	파키스탄	141	은행	04	대주주친족	04
인천 5	독일	203	인도네시아	142	증권회사	05	관계회사	05
대전 6	프랑스	201	태국	131	보험회사	06	등기임원	06
경기 11	중국	193	튀니지	623	투자신탁	07		
강원 12	대만	111	벨기에	205	종합금융	08		
충북 13	캐나다	301	노르웨이	221	단기금융	09	거주 유·무	
충남 14	홍콩	113	터키	209	상호신용금고	10	거주	1
전북 15	스위스	225	쿠웨이트	153	기타법인	11	비거주	0
전남 16	오스트리아	226	브라질	407	외국인	12		
경북 17	필리핀	112	체코	294	우리사주조합	13		
경남 18	네덜란드	204	폴란드	292	증권관련기관	14	발행회차	
제주 19	덴마크	223	칠레	403	연기금	15	보통주	01
기타 20	뉴질랜드	702	핀란드	229	국내일반법인	16	우선주	02
	버뮤다	333	헝가리	295	외국일반법인	17	2우선주	03
	호주	701	그리스	208			3우선주	04
	말레이시아	122	포르투갈	227			4우선주	05
	아르헨티나	402	남아공화국	661				
	스웨덴	222	이탈리아	202				
	싱가포르	123	스페인	232				
	멕시코	401	케이만섬	328				

3. 기타

신규주주 File은 주주에 대한 인적 사항을 당행 전산시스템으로 전환 관리하는 기본 자료이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엑셀 LAY-OUT

순번	회사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주명	...	증권사코드	계정구분	신탁구분	계좌번호
1	공란	1234561234567	홍길동	...	000001	0000	2	0123456
2	공란	1231212345	○○전자	...	000002	0000	2	0123456
3	공란	주민번호(01)	우리사주조합(홍길동)	...	000800	0000	2	0013
4	공란	1231212345	KB증권	...	000017	0000	1	

- ※ 금번 ○○회차 주주명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계좌번호가 기재된 각 주주의 주식은 전자등록해 주시고, 계좌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각 주주의 주식은 특별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를 제출한 주주는 유통일부터 증권사 본인계좌에서 주식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 증권사코드(6자리), 계정구분(4자리), 신탁구분(1자리) 항목별 자릿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 계좌번호가 0으로 시작하는 경우 0까지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참조 코드

증권사코드					
교보	000001		상상인	000029	舊 골든브릿지
신한금융투자	000002		삼성	000030	
한국투자	000003		DB금융투자	000031	舊 동부
대신	000004		하이투자	000046	
미래에셋	000005		한국에스지	000048	
신영	000006		키움	000050	
유진투자	000008		리딩투자	000052	
한양	000009		하나	000056	
메리츠	000010		IBK투자	000068	
NH투자	000012		카카오페이	000069	
부국	000013		DS투자	000070	舊 토러스
KB	000017	舊 현대 포함	다올투자	000071	舊 KTB
한화투자	000021		케이프투자	000072	舊 엘아이지
현대차	000022	舊 HMC	토스증권	000077	
유화	000023		BNK투자	000086	
유안타	000024		이베스트투자	000752	舊 이트레이드
SK	000025		코리아에셋투자	000753	
			한국증권금융	000800	
신탁구분					
자기분	1				
고객분	2				
신탁분	3				

1. 한국거래소 표준코드 시스템 회원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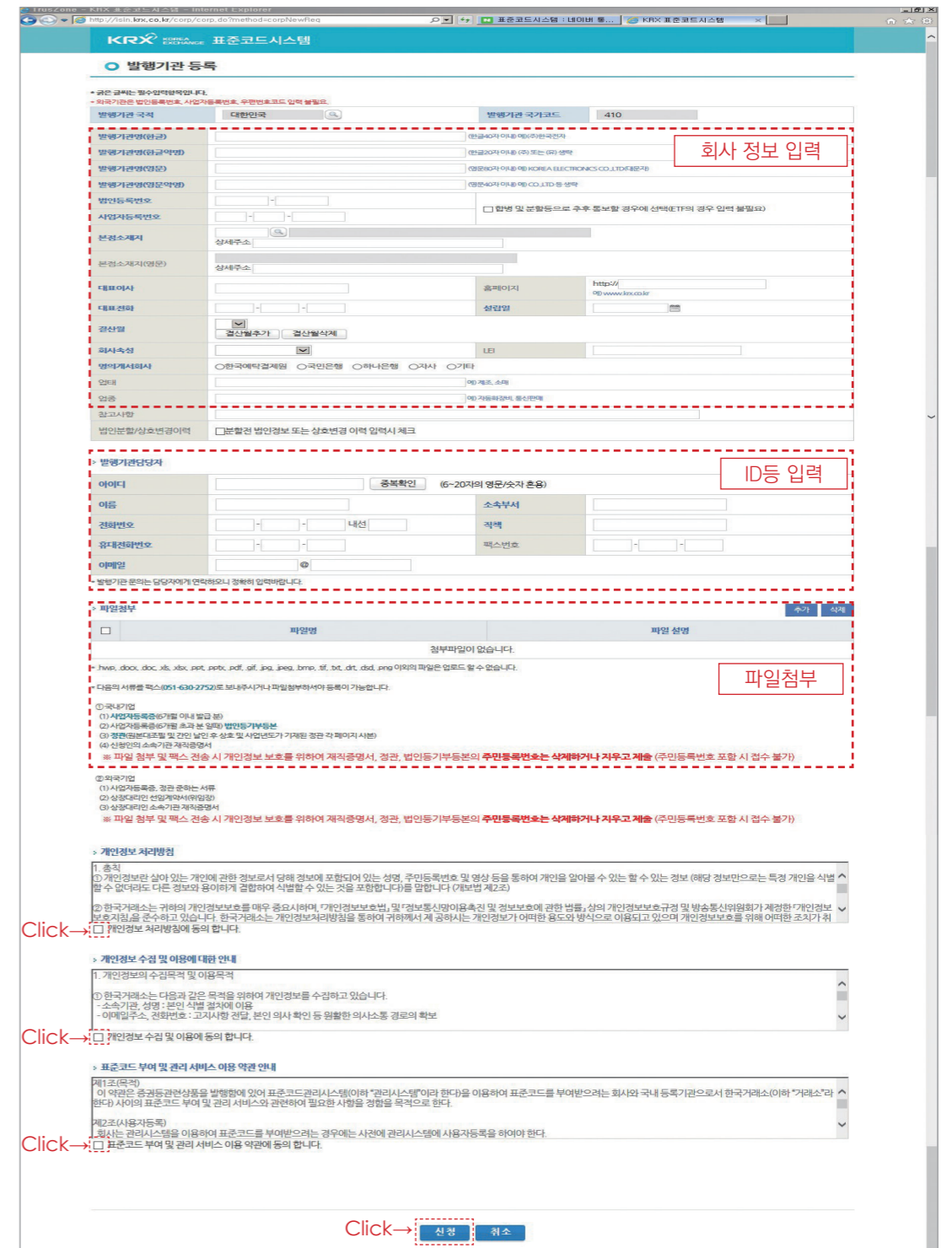
- 1) 시스템 접속 (<http://isin.krx.co.kr>) ⇒ 「회원가입」 버튼 클릭
⇒ 포털사이트에 「표준코드시스템」으로 검색 및 접속 가능



2) 「발행기관 등록」 클릭



- 3) 발행기관(회사) 정보 입력, 발행기관(회사) 담당자 정보(사용할 ID 등) 입력
- 4) 필요서류 파일 첨부 또는 팩스 전송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정관(회사 상호 및 사업연도 페이지만 필요)
- 5) 「신청」버튼 클릭



2. 표준코드 채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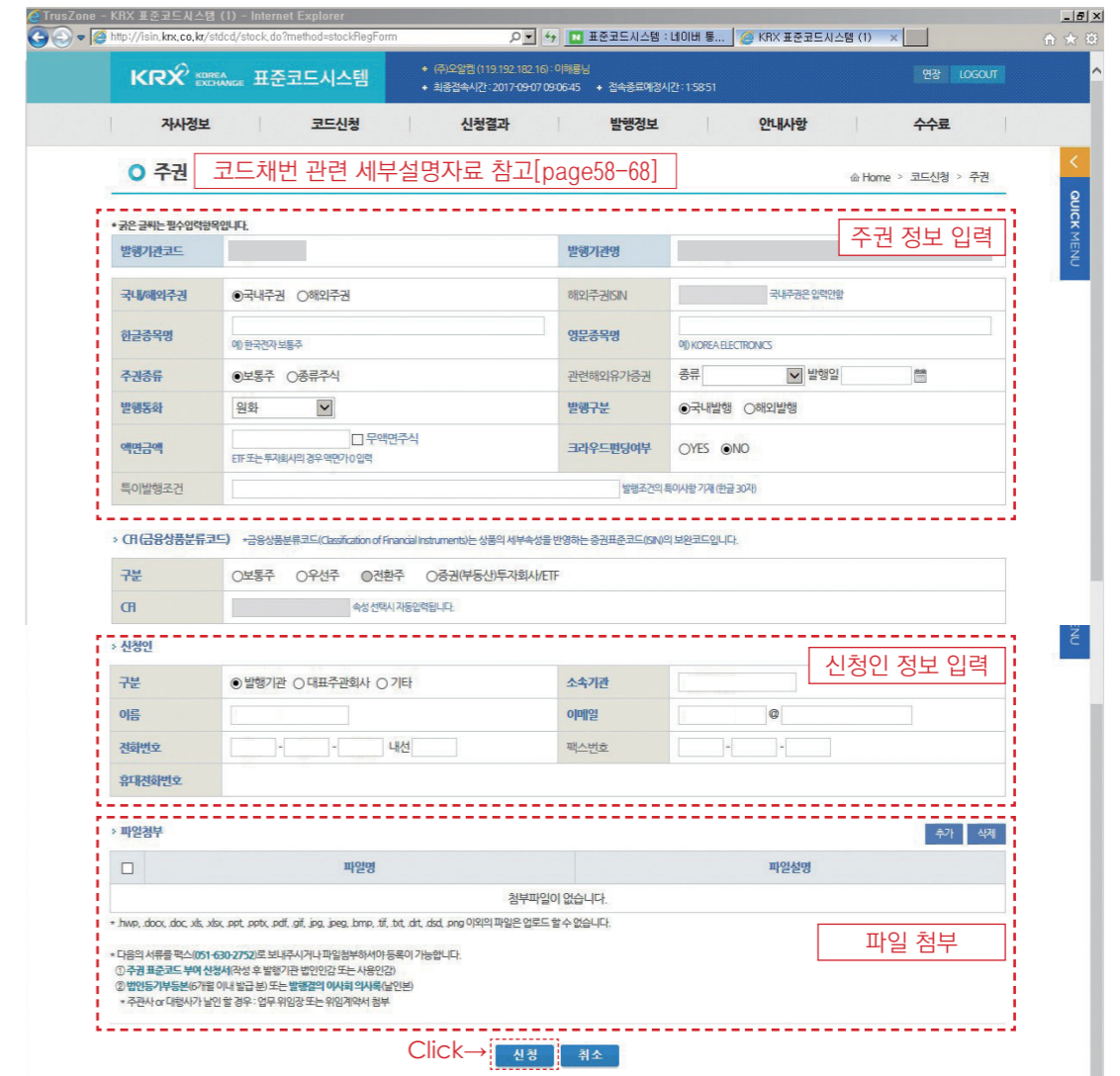
1) 아이디 및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임시 비밀번호는 사용할 비밀번호로 변경 가능)



2) 「코드 신청」 ⇒ 「주권」 클릭



- 3) 주권 정보 입력 : 한글종목명, 영문종목명, 주권종류, 액면금액, 금융상품 분류코드
- 4) 신청인 정보 입력
- 5) 필요서류 파일 첨부 또는 팩스 전송
⇒ 필요서류 : 주권표준코드부여신청서(법인인감 날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6) 「신청」버튼 클릭



- 7) 표준코드 채번 수수료 납입(주식 종목별 각 20,000원)
 ⇒ 한국거래소 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11-590186

수수로안내 Home > 수수료안내

수수료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11-590186

>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코드 부여 수수료

증권 등 관련 상품의 분류	금액	증권 등 관련 상품의 분류	금액
주권/ETF	20,000원	투자계약증권	10,000원
채권	20,000원	유가증권예탁증서(DR)	20,000원
ELS/DLS/ELB/DLB	10,000원	전자단기사채/CP	10,000원
신주인수권증권(WR)	10,000원	수익증권	20,000원
신주인수권증서(R)	10,000원	양도상대금증서(CD)	10,000원
주식워런트증권(ELW)	10,000원	ETN	10,000원

> 수수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납부시기	납부방법
표준코드 신청 시	1. 개별 납부 : 증권 등 관련상품의 표준코드부여 신청을 할 때마다 해당금액을 미리 납부 2. 일괄 납부 : 일정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표준코드 부여 신청할 때 자동으로 차감

> 반환 및 추가납부

가. 거래소는 표준코드 부여수수료가 과납된 경우에는 발행기관에 과납 수수료를 반환합니다. 이 경우 해당 발행기관 등이 거래소에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나. 표준코드가 부여되었으나 삭제된 경우에는 납부한 표준코드부여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다. 표준코드 부여수수료를 일괄납부하는 발행기관 등은 차감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거규정

표준코드부여신청을 한 발행기관등은 표준코드부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코드부여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제15조의 2

- 8) 표준코드 채번이 완료되면 한국거래소에서 회사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e-mail 통보
 9) 회사 담당자는 증권대행사업부 담당자에게 표준코드 채번 완료 통보

통일규격주권 실물



주권종류 (8종)	<input checked="" type="checkbox"/> 1주권 / 5주권	주권기재 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회사의 상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주권 / 50주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회사의 설립 연월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주권 / 500주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식의 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0주권 / 10,000주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1주의 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식의 발행일

주 주 증권예탁원 귀하				교 부 년 월 일	西紀 2001 年 12 月 31 日				
등록년월일	주	주	명	등록증인	등록년월일	주	주	명	등록증인
①					⑤				
②					⑥				
③					⑦				
④					⑧				

아래부분은 전산처리 되오니 글씨를 쓰거나 더럽히지 마십시오.

MEMO

Chapter 7

• 주식 사무 인계 서류 Sample

주식회사 ○○테크

(우)03929 서울시 ○○구 ○○로 25, 201호(○○동, ○○타워) • 담당/직급 차장 ○○○ ☎ 02-0000-0000

- 문서번호 : 제 호
- 시행일자 : 20○○년 ○월 ○○일
- 수신 : KB국민은행
- 참조 : 증권대행사업부장
- 제목 : 증권대행업무 계약 의뢰

당사의 정관 제 11조 1항에 의거 귀행을 당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증권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증권대행업무계약서 1부
2. 이사회이사록(명의개서대리인 선임) 사본 1부
3. 정관 1부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말소사항 포함 제출용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사용인감계 1부 ☞ 주식사무인계인수시
8. 환급용 은행계좌 사본 1부 ☞ 주식사무인계인수시
9.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1부

주식회사 ○ ○ 테크 
대표이사 홍 길 동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4곳 날인)

사 용 인 감	[날인] 
---------	---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OCR		OCR		OCR	
(주)○○테크		(주)○○테크		(주)○○테크	
[날인]		[날인]		[날인]	

위 인감은 명의개서대행계약에 의거 당사와 귀행간의 모든 문서에 사용하겠기에 본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주식회사 ○ ○ 테크 
대표이사 홍 길 동

주식회사 ○○테크

(우)03929 서울시 ○○구 ○○로 25, 201호(○○동, ○○타워) · 담당/직급 차장 ○○○ ☎ 02-0000-0000


- 문서번호 : 제 호
- 시행일자 : 20○○년 ○월 ○○일
- 수 신 : KB국민은행
- 참 조 : 증권대행사업무부장
- 제 목 : 주식사무 인계인수

귀행과 당사간에 체결한 증권대행업무계약서 제 15조 및 20조, 21조에 의거 주식사무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인계합니다.

당사는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계약서 원본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당사는 증권대행업무 수수료(기본수수료 및 개별수수료)의 내용 및 납부 의무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기본수수료는 일정진행 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선납 대상]	
당사는 최초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후 일정 유·무와 관계없이 3년간 의무기간 준수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당사는 증권대행업무와 관련한 일정(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분할, 합병, 주주총회, 배당 등)이 있을 경우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무부와 일정을 협의 결정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기 발행한 비통일주권(미발행확인서 등)의 회수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붙임


1. 증권대행업무 인계인수서 2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말소사항 포함 제출용
3. 주주 실명 확인서 1부.
4. 발행회사 현황 1부. 끝.

주식회사 ○ ○ 테크 
대표이사 홍 길 동

증권대행업무 인계인수서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서』 제 15조 및 20조, 21조에 의거 (주)○○테크와 (주)국민은행은 다음과 같이 주식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인계인수합니다.

□ 인계인수서류 목록표

구분	수량	주권전용 인감
1. 주주명부	1부	[날인] 
2. 주권전용 인감	필요시 인계 예정	
3. 제신고 관계서류 (소송압류 질권등록 등)	해당사항없음	
4. 기타	해당사항없음	

☞ 주권전용인감을 인계할 경우 위의 [날인] 칸에 날인

20○○년 월 일

인계자 주식회사 ○ ○ 테크 
대표이사 홍 길 동

인수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김 국민

실명 확인서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귀중

금번 귀행과 증권대행업무 사무인수에 따른 주주명부를 인계함에 있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의해 확인된 주주명부를 인계하며, 향후 동 확인 내역과 관련한 제반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당사가 부담할 것을 확약 합니다.


1. 실명확인 주주내역 : 붙임 주주명부상의 구 주주 홍길동 외 49명
2. 거래내용 : 증권대행업무 위탁에 따른 주주 및 소유주식 등의 신규등록. 끝.

2000년 0월 00일

주식회사 ○ ○ 테크
대표이사 홍 길 동 

발행회사 현황

상 호	한글	주식회사 ○○테크		
	영문표기	○○○○Tech Co.,Ltd.		
주 소	본 사	(우 :03929) 서울시 ○○구 ○○로 25, 201호(○○동, ○○타워)		
	우편물 수령처	(우 :03929) 서울시 ○○구 ○○○로 25, 201호(○○동, ○○타워)		
홈페이지	홈페이지주소	www.○○ tech.co.kr		
참고사항	자기주식 취득율	4.65%	최대주주 등 지분율	47.50%
	우리사주설립	부	우선주 발행	여
	일반주권발행	여	제신고 사항	부
주식 업무 담당자	구분	담당자 1	담당자 2	담당자 3
	부서명	경영지원실	경영지원본부	
	직위	차 장	이 사	
	성명	○○○	○○○	
	전화번호 (내선번호)	02-0000-0000	02-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010-0000-0000	
	E-mail	○○ @○○tech.co.kr	○○ @○○tech.co.kr	
팩스번호	02-0000-0000	02-0000-0000		

주식회사 ○ ○ 테크
대표이사 홍 길 동 

주식회사 ○○테크

(우)03929 서울시 ○○구 ○○로 25, 201호(○○동, ○○타워) • 담당/직급 차장 ○○○ ☎ 02-0000-0000

- 문서번호 : 제 호
- 시행일자 : 20○○년 ○월 ○○일
- 수 신 : KB국민은행
- 참 조 : 증권대행사업부장
- 제 목 : 주식발행 내역통보

당사의 주식발행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 협조 바랍니다

1. 주권발행 내역

회 차	주식종류	주 식 수	주 주 수	주식발행일
1회차	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	10명	2022년 08월 16일
2회차	기명식 우선주	10,000주	1명	2022년 02월 22일
3회차	기명식 2우선주	20,000주	1명	2022년 03월 22일
4회차	기명식 3우선주	30,000주	1명	2022년 04월 22일
5회차	기명식 4우선주	10,000주	1명	2022년 05월 22일
6회차	기명식 5우선주	50,000주	1명	2022년 06월 22일

2. 주식교부(유통)예정일 : 20○○년 ○월 ○○일

주식회사 ○ ○ 테크
대표이사 홍 길 동



통일규격 증권용지 사용 신청서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귀하

주식회사 ○○테크 통일규격증권 등 취급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일규격 증권용지 사용을 신청합니다.

1. 회사명(설립일) : (주)○○테크(2018년 01월22일)
2. 사용예정시기 : 9월
3. 사업목적 : 반도체 제조기기 제조
4. 신청사유 : 주권의 대량발행에 따른 발행비용 절감 및 위변조 등의 방지와 유동성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5. 명의개서대리인(계약일) : KB국민은행(20○○년 ○월 ○○일)
6. 주식발행내역 :

1. 발행주식 총수	2,150,000주	2. 1주의 금액	500원
3.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기명식 우선주	4. 주주수	15명
5. 자본금	1,075,000,000원		

붙임

1. 정관 1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승인에 필요한 기타 보완서류 제출
- ☞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인 및 간인 하실 것
- ☞ 말소사항 포함 제출용
- ☞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 하실 것

20○○년 월 일

- 주 소 : 서울시 ○○구 ○○로 25, 201호 (○○동, ○○타워)
- 상 호 : (주) ○ ○ 테크
- 대표이사 : 홍 길 동



• 담당자/직급 차장 ○ ○ ○ ☎ 02-0000-0000

예탁대상증권 지정신청서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귀하

주식회사 OO테크는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예탁대상증권 지정을 신청합니다.

1. 신청사유 : 주주의 주식보관에 따른 분실, 사고위험 방지 및 주주관리의 효율성 제고
2. 회사 및 주식발행 현황

1. 회사설립일	2018년 01월 22일	2. 대표자	홍길동
3. 결산월	12월	4. 총 발행주식수	2,150,000주
5. 자본금	1,075,000,000원	6. 주식 액면가	500원
7. 주주수	15명	8. 명의개서대행기관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9. 공모일	-	10. 공모금액	-
11. 주식발행가	-	12. 대행계약 체결일	2000년 08월 16일

※ 7의 주주가 1명일땐 자세한 사항 기재요
 ※ 9,10,11는 투자회사에 한함

3. 발행주식내역

주식발행 회차	주식의 종류	발행 주식수	주식 발행일	교부일
1회차	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	2019년 08월 16일	2000년 10월 25일
2회차	기명식 우선주	10,000주	2018년 02월 22일	2000년 10월 25일
3회차	기명식 2우선주	20,000주	2018년 03월 22일	2000년 10월 25일
4회차	기명식 3우선주	30,000주	2018년 04월 22일	2000년 10월 25일
5회차	기명식 4우선주	40,000주	2018년 05월 22일	2000년 10월 25일
6회차	기명식 5우선주	50,000주	2018년 06월 22일	2000년 10월 25일


4. 기 타

예탁대상증권 발행회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제규정에 따라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붙임

1. 통일규격증권 사용승인서 1부
 2. 정관 1부 ☞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인 및 간인 하실 것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등기항전부증명서 1부 ☞ 말소사항 포함 제출용
 5. 투자계약서 및 이사회 의사록(우선주발행) 1부. 끝.
- ※ 승인에 필요한 기타 보완서류 제출

2000년 0월 00일

- 주 소 : 서울시 OO구 OO로 25, 201호(OO동, OO타워)
- 상 호 : (주) O O 테크 
- 대표이사 : 홍길동

발행인관리계좌 개설 및 업무참가 신청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계좌번호*	
계좌명	

-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발행인관리계좌 개설 및 업무참가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며, 전자증권법을 비롯한 제반 법령과 한국예탁결제원의 내규 및 약관(향후 제·개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처리관행 및 조치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한국예탁결제원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전자적 업무처리시스템에 참가를 신청하며, 「예탁결제원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향후 제·개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발행인관리계좌 개설 신청 및 업무참가 신청 (신청사항에 하십시오)

명칭(회사명)	(주)OO테크
참가 신청 업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식 전자등록 <input type="checkbox"/> 채권 전자등록 <input type="checkbox"/> 단기사채 전자등록 <input type="checkbox"/> CD 전자등록 <input type="checkbox"/> 파생결합증권 전자등록 <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증권 전자등록 <input type="checkbox"/> KDR 전자등록

※ 주식 전자등록 대상 :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 등, 채권 전자등록 대상 : 사채, 국채, 지방채 및 신주인수권증권 등

2. 발행대리인 신고 (신청사항에 하십시오)

대리 업무	<input type="checkbox"/> 최초 신고	<input type="checkbox"/> 해지 신고	<input type="checkbox"/> 변경 신고		
			변경 전 발행대리인	변경 후 발행대리인	변경 적용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식 전자등록	KB국민은행				
<input type="checkbox"/> 채권 전자등록					
<input type="checkbox"/> 단기사채 전자등록					
<input type="checkbox"/> CD 전자등록					
<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증권 전자등록					
<input type="checkbox"/> KDR 전자등록					

※ 발행대리인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10조에 따라 발행인을 대리하여 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위한 사전심사 및 신규 전자등록 신청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발행인이 주식,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주식에 한한다) 및 KDR의 전자등록 업무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발행대리인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업무대금계좌 신고

결제유형	계좌번호	계좌명
한국은행의무결제		

※ 단기사채 전자등록 발행인 중 본인명의로 한국은행 BOK계좌를 이용해 자금결제를 직접 수행할 발행인만 작성합니다.

4. 네트워크(CCF/VPN) 연계

1) 네트워크(CCF/VPN) 연계 여부 (신청사항에 √하십시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연계	<input type="checkbox"/> 연계
---	-----------------------------

※ 연계의 경우 "2) 업무단위별 네트워크 연계 신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업무단위별 네트워크 연계 신청 (네트워크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하십시오)

서비스명	업무단위
단기사채등록	<input type="radio"/> 발행인
CD등록	<input type="radio"/> 발행인
파생결합증권등록	<input type="radio"/> 발행인

5. 사용인감 신고 (사용인감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란에 날인하십시오)

사용인감 인영

2000년 0월 00일

- 주 소 : 서울시 00구 00로 25, 201호(00동, 00타워)
- 상 호 : (주) 0 0 테크
- 대표이사 : 홍 길 동



붙임 서류

붙임 서류	
국내법인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법인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투자등록증 등) 1부 나. 발행대리인 선임에 관한 계약서류 사본 1부 다. 발행대리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붙임서류가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에 한함

사전심사 및 전자등록 신청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 회사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 제25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라 주식등의 사전심사 및 그 신규 전자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전자증권법을 비롯한 제반 법령과 한국예탁결제원의 내규 및 약관(향후 제·개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신청 회사

■ 회사명 : (주) ○○테크		■ 발행인관리계좌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 본점 등 소재지 : 서울시○○구 ○○로 25, 201호(○○동, ○○타워)	
■ 업무 담당자			
직위(직책)	성명	회사 전화번호	E-mail
차장	○○○	02-0000-0000	○○@○○tech.co.kr

2. 주요 발행 정보

■ 주식등 구분 : 기명식 보통주, 기명식 우선주	■ 발행근거(법령 등) : 전자증권법 제25조
■ 종목명 : ○○테크보통주, ○○테크우선주(전환상환)	■ 발 행 일 : 2000년 08월 16일
■ 등록예정수량 : 2,150,000	■ 양도제한여/부 : 부
■ 전자등록유형 :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발행	■ 전자등록일(예정) : 2000년 10월 25일

3. 전자등록 신청 내역

구분	주식 등 종류	종목명	종목코드	단축코드	의결권		발행수량(주)
			배당조건	최저배당	전환권	상환권	
1	기명식 보통주	○○테크 보통주	KR7345000005	A345000	1주의결권		2,000,000
2	기명식 우선주	○○테크 우선주 (전환상환)	KR734500K017 누적, 참가	A34500K 1.0%	가능	가능	10,000
3	기명식 2우선주	○○테크 2우선주 (전환상환)	KR734500K025 누적, 참가	A34500L 1.0%	가능	가능	20,000
4	기명식 3우선주	○○테크 3우선주 (전환)	KR734500K033 비누적, 참가	A34500M 2.0%	가능	불가능	30,000
5	기명식 4우선주	○○테크 4우선주 (상환)	KR734500K041 누적, 참가	A34500N 1.0%	불가능	가능	40,000
6	기명식 5우선주	○○테크 5우선주 (전환상환)	KR734500K058 비누적, 참가	A34500P 2.0%	가능	가능	50,000
합계							2,150,000

4. 공고·통지 수행 내역 (전자증권법 제27조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십시오)

■ 공고기간 : 2000.09.24~2000.10.24	■ 공고 수단 :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신문		
■ 소유자 통지 여부 : (여)	■ 특별계좌 관리기관 : KB국민은행		
■ 특별계좌 관리기관 업무 담당자			
직위(직책)	성명	회사 전화번호	E-mail
과장	홍길동	02-0000-0000	

붙임

- 정관·계약서·약관 등(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000년 ○월 ○일

• 주 소 : 서울시 ○○구 ○○로 25, 201호(○○동, ○○타워)

• 상 호 : (주) ○ ○ 테크

• 대표이사 : 홍 길 동



MEMO

Chapter

8

• FAQ

FAQ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납입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회사의 설립이후 1년이 경과된 비상장 법인의 경우 발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라도 벤처기업,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최근 사업연도 외감 의견이 적정한 경우 발행이 가능하며,
- 회사 설립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합병이나 분할 전의 존속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경과 법인 이거나 자본금 100억원 이상 법인인 경우 발행이 가능합니다.

통일규격증권 발행 시 기존의 비통일주권(미발행확인서 등)을 회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통일규격증권 발행시 주식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발행된 미발행확인서와 같은 비통일주권이 있을 경우 회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규격증권으로의 교체발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기존에 발행된 비통일주권이 유통되어 제3의 매수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거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으로서, 혹시 회수가 어려울 경우 기존 주주분계 각서 등을 징구하시어 회사의 책임하에 회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코드 신청시 우선주를 어떻게 채번해야 하나요?

-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 표준코드를 채번하며, 우선주의 경우 계약서를 확인하여 우선주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 가능 여부, 전환 가능 여부, 누적적 배당 여부, 참가적 배당 여부 등을 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 표준코드 종목명은 ○○테크보통주, ○○테크1우선주(전환상환), ○○테크2우선주(전환) 등으로 우선주별 계약 조건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언제 납부를 하게 되며 감면 받을 수는 없나요?

-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개별수수료로 구분되며, 기본수수료는 회사의 결산월을 기준으로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시고, 개별수수료는 매분기 익월말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수수료의 감면은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에 한해 기본수수료 50% 감면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명의개서 대행기관 3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FAQ

통일규격증권 발행이후 주주명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산자료 요청의뢰서를 작성하셔서 증권대행사업무 담당자에게 e-mail로 주주명부를 요청하시면, 전산 파일 출력물 형태로 발급하여 보내드립니다.
- 명부주주는 전 영업일자 기준으로 주주명부 발급이 가능하나, 실질주주가 포함된 전체주주 명부는 상법상 정해진 사유(임시주주총회 등)가 있을 경우에만 기준일 공고를 통해 증권대행사업무로 요청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로 입고 요청 시 우리사주 주식은 어느 계좌로 신청하나요?

- 통일규격증권으로 교체발행을 완료하면 주주분들의 증권 계좌로 주식을 받아 전자증권 형태로 계좌 거래가 가능해 집니다. 우리사주 주식의 경우 계좌 입고 신청 이전에 한국증권금융에 '우리사주조합(홍길동)'의 형태로 계좌개설 계약을 체결하신 후, 우리사주조합계좌(800-0013)로 입고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호예수는 언제 해야 하나요?

- 코스닥 상장심사 청구 이후 심사 승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최대주주 등에 대해 일정기간 보호예수가 필요하며, 주관 증권사별로 심사청구 일정에 따라 보호예수 진행 시기가 다를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주관 증권사와 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EMO



신규 계약 문의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마케팅팀 02-2073-8109 / 02-2073-8106

- 2017.09.19 초판 발행 / • 2019.08.31 1차 개정판 발행 / • 2019.09.16 2차 개정판 발행
- 2022.03.31 3차 개정판 발행 / • 2024.01.02 4차 개정판 발행